#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32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 송옥주·이광희·박 정

이병진 • 전종덕 • 황정아

이수진 • 권칠승 • 이재강

추미애 • 오세희 • 홍기원

박해철 · 황명선 의원

(14위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 련이 시급한 상황임.

이에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,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,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 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
- 3. 「식품위생법」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6조의2(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)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(이하"방사능 안전성 검사"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방사능 안전성 검사의 결과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  -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 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한다.

제23조제1항 중 "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"을 "제16조제 1항제1호, 제2호 또는 제3호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6조제1 항제3호의 규정을"을 "제16조제1항제4호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 호 중 "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"을 "제16조제1항제5호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	제16조(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
수사항) ① 학교의 장과 그 학	수사항) ①
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	
당하는 관계 교직원(이하"학	
교급식관계교직원"이라 한다)	
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	
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	
아니된다.	<u>.</u>
1.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	1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
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	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유전
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	<u>자변형농수산물</u>
적은 식재료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. 「식품위생법」 제12조의2제
	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
<u>3.·4.</u> (생 략)	<u>4.·5.</u>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
	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16조의2(식재료의 방사능 안전
	성 검사) ① 교육부장관 또는
	교육감은 방사능에 오염된 식

제23조(벌칙) ① <u>제16조제1항제1</u> 제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 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
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
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
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재료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
호하기 위하여 식재료에 대한
방사능 안전성 검사(이하 "방
사능 안전성 검사"라 한다)를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라 실시하여야 한다.
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
방사능 안전성 검사의 결과를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라 공개하여야 한다.
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
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
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
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라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
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.
]23조(벌칙) ① <u>제16조제1항제1</u>
호, 제2호 또는 제3호를
② 제16조제1항제4호를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
-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
 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
- 2. (생 략)

③
1. 제16조제1항제5호를
2. (현행과 같음)